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38호]

## 2025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15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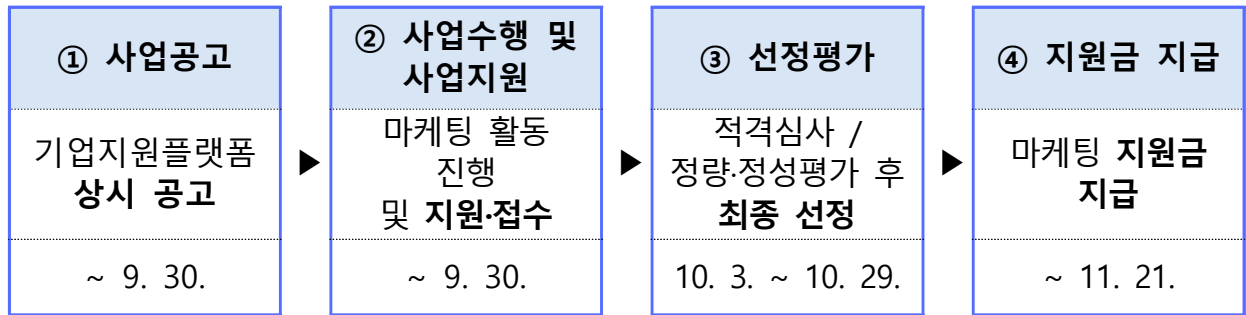
### 0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 2025. 9. 30.(화)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등록공장이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총 11개사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1개 분야 신청 가능

분 야	온라인 마케팅		
	판매계정 / 수수료	온라인 홍보 콘텐츠	홍보 페이지 제작
세부분야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지원한도	3개사	3개사	5개사
지원규모	3개사	3개사	5개사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정개설 수수료</li> <li>◦ 유료회원 가입비(아마존 등)</li> <li>◦ 플랫폼 이용수수료</li> <li>◦ 라이브커머스 개설</li> <li>◦ 검색엔진 마케팅 (네이버, 쿠팡 등 키워드 검색 광고, 배너 상단 노출 광고)</li> <li>◦ 소셜미디어 광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 카카오톡 채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디자인(CI·BI·로고)</li> <li>◦ 패키지디자인(포장)</li> <li>◦ 앱 디자인(UI·UX)</li> <li>◦ 기업·제품 홍보영상</li> <li>◦ 카탈로그(웹용)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li> <li>◦ 홈페이지 구축</li> <li>◦ 자사몰 구축</li> <li>※ HW(서버 등)구입비,운영비 제외</li> </ul>

※ 지원금 및 지원 개수는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방식

- 총 사업비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 지원금 산정방식 : 총 사업비 x 지원 비율(80%)

구 분	지원한도/개사	지원비율	산정방식(예시)		
			총 사업비	지원금(80%)	자부담(20%)
판매계정 / 수수료	300만원	100%	300만원	300만원	-
온라인 홍보 콘텐츠	1,000만원	80%	1,250만원	1,000만원	250만원
홍보 페이지 제작	500만원	80%	625만원	500만원	125만원

## 02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기간 : ~ 2025. 9. 30.(화)
- 접수방법 : 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란) :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수행서(붙임2) PDF 업로드
  - (기타서류 제출란) : 나머지 서류 순서대로 PDF 병합 또는 알집으로 업로드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누락 정보 또는 불명확 촬영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붙임 1. 서식 활용
2	사업수행서	붙임 2. 서식 활용
3	사업 결과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포함)	붙임 3. 서식 활용
4	사업 결과물	해당 시 제출(영상, 카달로그 등)
5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붙임 4. 서식 활용
6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붙임 5. 서식 활용
7	사업자등록증	-
8	법인 등기부등본	해당 시
9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10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등) (5~10일 소요될 수 있음)
11	'23~'24 재무제표	'24년 재무제표 발급 전인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12	신청기업 통장사본	통장사본

### 03 지원조건 및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만 지원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인 당해 연도 사용 건만 지원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건,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만 지원 가능
  - 기업당 연간 최대 1건 이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산정은 건별 지원비율에 따르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기업 자부담
-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지원 제외 사항
지원불가 기업분류	중견기업 및 대기업
중복지원	2025년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업 동일 건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불가 항목	부가세, 사업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인건비, 운영비 등)
세금 체납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
참여 제한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 해당하는 자)

## 04 기업선정 및 평가방법

### □ 기업 선정방식

1단계	적격심사	▶ 제출서류 기반 적격성 검토
2단계	선정평가	▶ 서류평가(평가위원회 개최) 정량·정성 평가
3단계	기업선정	▶ 최종 기업 선정

1단계	적격심사	진흥원
-----	------	-----

연번	항목	기준	결과
1	자격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공장 등록증 등 평택 소재 기업)</li> <li>• 중소기업 확인서</li> <li>•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li> </ul>	적합 / 부적합
2	증빙서류	지출 증빙서류 원본	적합 / 부적합
3	지급서류	통장사본	여 / 부

2단계	선정평가	평가위원
-----	------	------

구분	평 가				최종 선정
	평가방식	평가구성	평가방법	평가내용	
선정평가	서면	3~4인 외부 평가위원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표 참조(6p)	<b>70점 이상</b> 고득점자 순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기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사업수행·집행 ②기업/제품 역량 ③기대효과

※ 잔여 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 기업 추가 선정 예정

3단계	기업선정	진흥원
-----	------	-----

○ 기업 최종 선정 안내(담당자 개별 이메일 안내)

○ 최종 지원 금액 산정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 후(後)지급(100%)

※ 지원기업 법인 및 대표자(개인사업자) 계좌 입금

□ 평가내용(선정평가)

- 정량평가 : 일반평가
- 정성평가 : 사업수행 적절성 등 평가

<정량·정성평가표>

평가항목		서류 / 내용	기준	배점		
감 점	수혜이력	'23~'24년 수혜기업	전체 사업	-10		
정량평가 (20점)	일반평가	기업규모 (매출액)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에 표시된 2024년 매출액	5억원 미만	10		
			5억원 이상 ~ 20억 미만	7		
			20억 이상 ~ 80억 미만	4		
			80억 이상	2		
			기업업력	- 사업자등록증	3년 미만	10
					3년 이상 ~ 7년 미만	5
7년 이상	2					
정성평가 (80점)	사업수행·집행 적절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 예산 집행·지출 증빙 완비성, 적절성	높음	~30		
			보통	~18		
			낮음	~10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신청이유, 마케팅 목표 (목표시장 및 매출액)	높음	~30
					보통	~18
					낮음	~10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고용, 인지도 등) - 파급효과(산업적,경제적 효과 기여) - 성과물 활용방안	높음	~20		
			보통	~15		
			낮음	~10		
	합 계				100	

## 05 유의사항

- 사업비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 제외임
- 사업비 산정 시 인건비, 운영비, 각종 공과금 등 계상 불가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선정 기업 제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선정 기업 제외
-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 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해연도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비용은 반환될 수 있음
- 지원대상(업체)이 마케팅 비용 지급 완료한 경우만 지원
  - ※ 마케팅 수행 기간 내 지출 발생 필수
- 협약기간 내 명시된 지원대상·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비용을 반환할 수 있음
- 기업 수요,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문의처 : (재)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전 화	전자메일
☎ 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